
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외에 대상지
인근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그러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해당 등기부 표기 토지 및
건물 소유자에게만 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
으로 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은
입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인접도로 반대편 대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까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7조제1항에 제1호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도시관리 계획 입안 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, 인접도로 반대편 대지 및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